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금 농장의 방역기준 준수 철저

1. 가금 농장의 방역기준 준수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가금 농장에서 가금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관련 적용 규정과 위반시 처벌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지자체와 가금 관련 협회는 관할 농가 등에 널리 알려주시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는 가금 농장 점검시 이점을 유념하여 가금 농장 등을 점검하시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 후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적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고병원성 AI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위반사례) 출입문이 아닌 "쪽문"으로 사람의 출입

- (적용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닭, 오리 농장에는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되어야 함
 - i) 울타리 또는 담장 시설은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연결된 구조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쪽문”은 사람, 동물 등이 소독 등 방역조치 없이 출입 가능한 단절된 시설로서 방역시설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
 - ii) “쪽문”은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가 미설치되어 있고, 사람, 동물, 차량의 출입을 확인하는 폐쇄회로 등 방역시설이 미설치되어 있어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의 “출입문”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시 신고한 방역시설이 아니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 [(2. 개별기준의 방역시설(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쪽문 폐쇄, 울타리 원상복귀 등 방역시설 개선 조치 필요

- (위반시 처분) 1천만원 이하 과태료(1회위반 100만원/2회 400/3회 800),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
- * (적용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② (위반사례) 농장 출입구 차단바 없음

- (적용규정)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
- (위반시 처분) 1천만원 이하 과태료(1회위반 100만원/2회 400/3회 800),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
- * (적용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③ (위반사례) '20.12.1일자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출입이 금지된 일반 차량 등이 가금 농장내로 출입

- (적용 행정명령, ' 20.12.19일 발령) 택배·우편·농장소유자·종사자 차량 등 전국 가금농장에 차량 진입 금지(응급차 등 제외)(시행기간: ' 20.12.22. ~ ' 21.2.28.)
- (위반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
- * (적용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④ (위반사례)가금 농장에서 죽은 가금 폐사체를 농장 밖의 밭, 산 등에 매물

- (적용규정)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가축의 폐사체를 불법으로 버리거나 매립, 소각 등 금지
- (위반시 처분) 「폐기물 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자 또는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적용규정) 「폐기물 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세종특별자치시(농업축산과장), 제주특별자치도(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동물방역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전라남도(동물방역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충청남도(동물방역위생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전라북도(동물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기획조정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진단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위험평가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평가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연구기획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세균질병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구제역진단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바이러스질병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조류질병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해외전염병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청주시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축산물위생검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김포공항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속초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용인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축산물위생검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광양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전주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축산물위생검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제주공항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서울가축질병방역센터장), 농림축산검역본부(용인가축질병방역센터장), 농림축산검역본부(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장),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광주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화물검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축산물위생검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김해공항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부산신항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신선대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대구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창원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축산물위생검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평택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장), 농림축산검역본부(청주가축질병방역센터장), 농림축산검역본부(대구가축질병방역센터장), 농림축산검역본부(김해가축질병방역센터장), 농림축산검역본부(전주가축질병방역센터장), 농림축산검역본부(광주가축질병방역센터장), 농림축산검역본부(제주가축질병방역센터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양계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주무관 **노규진** 사무관 **박경일** 방역정책과장 **최명철** 전결 2021. 1. 6.

협조자

시행 방역정책과-233 (2021. 1. 6.)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3층 357호 방역 / http://www.mafra.go.kr
정책과 (여진동)

전화번호 044-201-2520 팩스번호 044-868-0628 / nh5685@korea.kr / 대국민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